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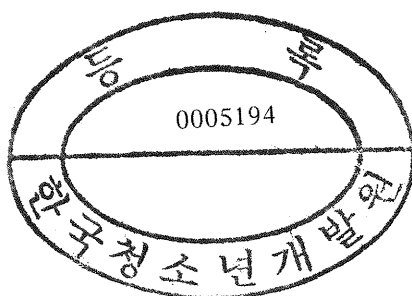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97-17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고 성 혜

연구자 : 전 명 기

박 창 남



한국청소년개발원

이 보고서는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머 리 말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을 위협할 만큼 청소년문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하의 조직적인 행정력과 동시에 순수 민간인 차원의 시민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자주 발생되거나 시급히 선결해야 할 문제행동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별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상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마다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제도적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른청소년 만들기와 유해환경 정화 활동등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협조해 준 청소년 담당 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7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원 장 김 사 홍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현황	5
1. 청소년지도위원의 특성	5
2. 청소년 주변환경에 대한 태도	12
3.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상태	16
4.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가	25
5.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시 요구되는 지식 및 자질	26
6.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애로사항	33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	40
1.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문제점	40
2. 활동활성화 방안	42
참고문헌	60
요약	61
부록	67

표 목 차

<표 1>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5
<표 2>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	6
<표 3> 청소년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
<표 4> 성별과 연령별 교차표	8
<표 5> 성별과 학력별 교차표	9
<표 6> 성별에 따른 직업별 분포	9
<표 7> 연령별과 학력별 교차표	10
<표 8> 연령별에 따른 직업별 분포	11
<표 9> '96하반기 시·도별 청소년지도위 현황 및 활동실적	18
<표10> 청소년지도위원의 개인적 배경변수와 참여율	20
<표11> 활동연수별 청소년지도위원의 특성	23

그 림 목 차

<그림 1> 활동연수에 따른 성별분포	22
----------------------------	----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정보의 신속한 유통 등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주위의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의 생활양식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고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며, 일보다 여가생활을 중시하고, 자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뉴미디어 세대이다. 학교 밖의 공간은 재미있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공간이 많은데 반해 학교는 일부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하고 건조한 공간이 되었다. 긴장과 경쟁 속에서 성장의 그늘에 버려진 자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감, 무력감, 패배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길거리나 공원, 또래 집단이 모여 즐기는 지역으로 쉽게 유입된다. 그 곳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익명성도 보장되며,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놀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는 곳 대부분이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일탈행동이 집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점에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생활공간은 가정, 학교와 학교 주변을 벗어나 성인문화가 주도하는 곳까지 넓혀짐에 따라 점차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대해 처음에는 낯설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나, 익숙해지면 친화력이 생기거나 호감을 갖게 된다. 또한, 한번 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 곳에서 재미를 느낀 청소년은 죄책감 없이 습관적으로 드나들며, 자기 또래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적게

느껴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유해환경이나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학교나 경찰과 같은 공식 기관의 활동만으로 불가능하다. 청소년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도하는 공동체적 차원의 대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지역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와 사회에서의 청소년지도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는 시·군·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정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의 임무는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 민간의 응집된 힘과 실천을 기대했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주로 유해환경을 방문·지도하거나 가두 캠페인을 하는 것에 그쳐 현실적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꾸짖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 뜻있는 일반인의 행동이 위축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정체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대한 청소년지도위원의 태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애로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미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육성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사회 전반

의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및 관리상의 문제제기를 통해 지도위원 관리체계 정비 방안에만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청소년 문제행동은 날로 더해가고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역할 참여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기보고식의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서울시의 청소년지도위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결과 등을 참고하고,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을 설문문항으로 만들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일반적 문항 4문항, 청소년지도위원 역할 중요도에 대한 평가 5문항,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경위 및 활동 정도에 관한 문항 6문항,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지도위원의 활성화방안과 관련된 문항 15문항과 청소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청소년 주위 환경에 대한 태도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미미한 만큼 이들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각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처음 의뢰되어 활동상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도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극히 미흡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조차 입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으므로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었다. 전국의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탐색 결과, 이미 연수교육이 종료되었거나 대부분이 11월에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인천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다.

설문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23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활용하여 빈도분포, 평균, 상관관계 분석, T-검증, F-검증을 하였다.

(3) 연구영역

본 조사는 관련 선행연구도 미비하고,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표집대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지 않았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도구의 문항구성에서 명시한 부분을 조사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기존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실적 및 연수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을 참고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인적 분포, 활동실적 및 조사대상 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정도는 어떠한가. 참여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다섯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자질은 무엇인가.

여섯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현황

1. 청소년 지도위원의 특성

(1)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적 분포 및 활동실적

각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거해 읍, 면, 동별로 10인 이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읍, 면, 동장, 경찰관서장, 교육장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협의회에서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96년 하반기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총 36,91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의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11,741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구분	'96 하반기(A)			'96 상반기(B)			증 감 (B-A)		
	읍·면·동	지 도 협의회	지도 위원	읍·면·동	지 도 협의회	지도 위원	읍·면·동	지 도 협의회	지도 위원
내역	3,774	3,778	36,915	3,783	3,771	37,070	△9	7	△155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현황은 전체 인원과 위촉, 해지자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만,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분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지도위원의 연령이 많은 경우, 경험이 많아 지도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연령 차이로 인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몰이해, 세대 차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성별 불균형 역시 청소년지도시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다.

충남지역 218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9%가 50대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수치는 전체 충남의 지도위원 2,008명의 분포와 같다고 결코 볼 수 없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본 연구진이 각 구청 내 청소년지도위원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에서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 보고되었다. 지도위원의 70% 정도가 주부이고 나머지는 자영업 종사하는 남자가 많다는 지역도 있고, 주부와 노년층이 대부분이라는 곳,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자로 주로 지역사회 내에 다른 직위를 갖는 통장이나 새마을운동종사자인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상 애로점이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연한,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분포등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

구 분	'96 하반기(A)		'96 상반기(B)		증감 (B-A)	
	회 수	참여인원	회 수	참여인원	회 수	참여인원
유 해 업 소 지도계몽등	109,046	868,896	68,523	599,323	40,523	269,573

(2) 청소년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에 응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360명이며, 남자는 67.7%, 여자는 32.3%이다. 학력별 분포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22.5%, 고등학교 졸업이 52.5%, 대학교 졸업 이상이 25.0%로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6.7%, 40대가 43.5%, 50대가 29.5%, 60대 이상이 10.3%이다.

<표 3> 청소년지도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변 수	변 수 값	빈도(비율)	합 계
연 령	30대이하	60(16.7)	359(100.0)
	40 대	156(43.5)	
	50 대	106(29.5)	
	60대이상	37(10.3)	
성 별	남 자	243(67.7)	359(100.0)
	여 자	116(32.3)	
학 력	중졸이하	81(22.5)	360(100.0)
	고 졸	189(52.5)	
	대졸이상	90(25.0)	
직 업	전문직	2(0.6)	348(100.0)
	관리직	1(0.3)	
	사무직	17(4.9)	
	판매/서비스직	170(48.9)	
	생산직	52(14.9)	
	무 직	12(3.4)	
	주 부	94(27.0)	

직업별 분포에 의하면 전문관리직 0.9%, 사무직 4.9%, 판매/서비스직 48.9%, 생산직 14.9%, 무직 3.4%이고 주부가 27.0%이다. 전반적으로 행동의 자율성이 있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과반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영업 종사자로 유추된다.

반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는 조직사회에 소속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각 변수별로 차이 검증을 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청소년지도위원은 30-40대의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50-60대 이상이 28%에 불과하나, 남자 청소년지도위원은 여자에 비해 50대, 6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성별과 연령별 교차표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연령				합 계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성별	남자	37(15.4)	96(39.8)	77(32.0)	31(12.9)	241(100.1)
	여자	23(20.0)	59(51.3)	28(24.3)	5(4.3)	115(99.9)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을 보면, 남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지닌 자가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이 높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학졸업자가 많고, 여자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p=.052$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표 5 > 성별과 학력별 교차표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학 력			합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성별	남자	46(19.0)	129(53.0)	67(28.0)	242(100.0)
	여자	34(30.0)	57(50.0)	23(20.0)	114(100.0)

성별에 따른 직업별 분포에 의하면 여자는 대부분이 주부(80.9%)이고, 남자는 판매/서비스직(67.4%)과 생산직(20.0%)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성별에 따른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성 별		합 계
		남 자	여 자	
직업	전문직	2(0.9)		2(0.9)
	관리직	1(0.4)		1(0.4)
	사무직	14(6.1)		17(4.9)
	판매/서비스	155(67.4)	3(2.6)	170(49.3)
	생산직	46(20.0)	15(13.0)	50(14.5)
	주부		4(3.5)	93(27.0)
	무직	12(5.2)	93(80.9)	12(3.5)
빈 도		230	115	345(100.0)

각 연령대별 학력 분포에 의하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60대는 30-40대에 비해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가 2-3배나 되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 7> 연령별과 학력별 교차표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연령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학력	중졸이하	6(10.2)	25(16.2)	36(34.4)	12(32.4)	79(22.3)
	고졸	37(62.7)	88(57.1)	46(43.3)	17(45.9)	188(53.0)
	대졸이상	16(27.1)	41(26.6)	23(21.9)	8(21.6)	88(24.8)
합 계		59	154	105	37	355(100.0)

연령대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직/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각 연령대별 공통적으로 판매/서비스직과 주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라는 점에 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표 8> 연령별에 따른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연령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직업	전문직		1(0.7)	1(1.0)		2(0.6)
	관리직				1(2.8)	1(0.3)
	사무직		6(4.0)	8(7.9)	2(5.6)	17(4.9)
	판매/서비스	1(1.7)	75(50.3)	43(42.6)	17(47.2)	169(49.1)
	생산직	34(58.6)	17(11.4)	24(23.8)	4(11.1)	50(14.5)
	주부	5(8.6)	50(33.6)	22(21.8)	4(11.1)	94(27.3)
	무직	18(31.0)		3(3.0)	8(22.2)	11(3.2)
합계		58(16.9)	149(43.3)	101(29.4)	36(10.5)	344(100.0)

2. 청소년 주변환경에 대한 태도

우리 주변의 청소년관련 문화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신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역시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외국의 문물을 거의 동시대적으로 접하며, 연예인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청소년을 바라볼 때, 청소년 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하나일 수 있으나, 기성세대들은 파행적이며 퇴폐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이 증가되는 우리 주변 환경으로 학력주의 사회, 유해환경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 성인 퇴폐문화 및 왜색문화의 노출, 도덕불감증 및 윤리의식의 약화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분위기나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위방식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도위원들이 가장 우려되는 사회환경으로 지적한 것은 경쟁적 입시제도(67.3%)와 사회의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66.9%)이다. 이 외에도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61.8%), 유명메이커 제품선호(60.7%), 일본문화의 도입(58.0%), 향락문화(52.2%), 성개방 풍조(49.1%) 등도 지도위원이 심려할 수준에 달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예인에 대한 열성적 지지, 자유로운 이성교제,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보다 우려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학력제일주의가 낳은 입시제도이다. 이 외에도 각종 유해환경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며, 성인 중심의 퇴폐적인 향락문화와 일본문화의 침투는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경험하게 된 청소년이 이러한 욕구를 극복하고 지연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더욱 학교생활에서 소외된 집단의 경우, 자신의 무력감과 무능력, 소외감을 잊고 대체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바로 성인중심의 퇴폐 문화요, 유해업소들로 적극적으로 이들을 유인한다는 점에 문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항 목	매우 걱정	약간 걱정	반반	별로 걱정 아님	전혀 걱정 아님	합 계
경로효친사항의 약화	228 61.8%	112 30.4%	21 5.7%	8 2.2%	0 0.0%	369 100.0%
경쟁적 대학입시 교육제도	243 67.3%	86 23.8%	24 6.4%	7 1.9%	1 0.3%	361 100.0%
열성적 연예인 지지	109 30.3%	133 36.9%	74 20.6%	41 11.4%	3 0.8%	360 100.0%
유명메이커 제품 선호	222 60.7%	100 27.3%	29 7.9%	15 4.1%	0 0.0%	366 100.0%
자유로운 이성교제	82 22.7%	138 38.1%	91 25.1%	47 13.0%	4 1.1%	362 100.0%
여성차별감소	38 10.1%	98 27.1%	138 38.2%	72 19.9%	15 4.2%	361 100.0%
성개방 풍조	185 49.1%	115 32.2%	45 12.6%	12 3.4%	0 0.0%	357 100.0%
각종 유해환경	243 66.9%	89 24.5%	23 6.3%	8 2.2%	0 0.0%	363 100.0%
어른들의 향락문화	188 52.2%	129 35.8%	37 10.3%	5 1.4%	1 0.3%	360 100.0%
일본문화의 유입	206 58.0%	101 28.5%	28 7.9%	18 5.1%	2 0.6%	355 100.0%

반면, 청소년기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우상을 갖고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알고 하고 옷차림이나 몸짓을 따라 하려는 것이나 남녀간의 교제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에 대한 분위기가 남아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사회 현상에 비해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각 문항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별로 걱정스럽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성별,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지도위원이 여자 지도위원보다 덜 걱정스럽다고 응답했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났다. 생산직 종사자는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이보다는 다소 걱정스럽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경쟁적인 대학 입시제도는 남자 지도위원이 걱정하는 경우가 여자 지도위원보다 많았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열성적인 연예인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걱정스러워 했으며,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가 걱정스러워 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명메이커 제품 선호 현상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집단은 판매/서비스직으로 나타났고,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는 걱정스러워 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한 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정부 및 시민단체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효과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직업별, 연령별, 학력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항 목	매 우 효과적	약 간 효과적	반 반	별 효과 없음	전혀 효과없음	합 계
빈 도	46	131	77	79	15	348
비 율	13.2%	37.6%	22.1%	22.7%	4.3%	100.0%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도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강제성을 띤 것이라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항목	적극 찬성	약간 찬성	반반	반 대 하는 편	적극 반대	합 계
빈도	219	118	20	3	0	360
비율	60.8%	32.8%	5.6%	0.8%	0.0%	100.0%

3.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상태

(1)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경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경위를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자원한 경우는 21.3%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나 동장, 통장의 권유 혹은 지역사회내 청소년선도위원, 폭력추방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다른 직책을 맡고 있어 강제로 위촉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업과 지도위원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에서의 인식 부족으로 활동상 어려움이 많고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직처럼 맡게 된 경우, 활동에 대한 동기화가 부족하고 참여도도 낮은 반면, 자발적으로 지도위원이 된 경우,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위원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위원 위촉 방법 및 활동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빈	도	비	율
자발적으로	76		21.3	
동장, 통장 권유로	86		24.1	
기존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권유로	97		27.2	
다른 직책을 맡고 있어서	87		24.4	
기 타	11		3.1	
합 계	357		100.0	

성별에 따른 위촉경위를 살펴보면 남자는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보다 주위의 권유에 의해 청소년지도위원이 되었다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p=.053$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청소년지도 활동참여율

'96년도 하반기까지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으로 문화체육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주로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을 주로 하고, 유해업소 계몽, 캠페인활동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해업소를 방문해서 전단을 배포하거나 지도 계몽하며, 등하교길 불량청소년 단속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지역단위 사업 위주의 활동으로 알뜰장을 열어 마련한 기금을 모범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하거나 청소년 농구대회, 밤줍기 대회, 방학기간 예절학교운영, 불우청소년 결연사업등을 하기도 한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96년도 하반기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은 109,046회, 참여인원은 868,896명으로 이 수치가 각 활동시마다 참여한 인원의 누계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도위원의 활동율은 결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반면, 조사대상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해 각자 속한 지도협의회에서의 활동 횟수에 대한 자신의 참여횟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여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총 280사례에 대해 활동참여율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지역내 일어나는 지도위원 활동에 반 이하 참여한다고 보고한 지도위원은 전체 응답자의 30%이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문제제기한 것과는 달리, 10번의 행사 중 8번 이상 참여하고 있는 지도위원이 47.9%에 달하고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표 9> '96 하반기 시·도별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

시 도	읍·면·동 수	협의회 수	지 도 위원 수	활 동 실 적									
				계		유해업소계몽		캠페인 등		청소년보호 및 선도		기타활동	
				횟 수	참여인원	횟 수	참여인원	횟 수	참여인원	횟 수	참여인원	횟 수	참여인원
서울	528	523	5,169	13,178	86,565	3,623	22,773	2,974	25,002	4,721	26,787	1,860	12,003
부산	239	239	2,606	9,876	77,516	2,696	21,297	1,512	16,509	4,445	29,651	1,223	10,059
대구	159	159	1,575	5,939	43,738	2,024	14,018	1,081	10,147	2,358	16,301	476	3,272
인천	148	148	1,397	2,326	19,673	625	5,105	418	4,718	1,053	7,729	230	2,121
광주	102	102	994	2,332	16,631	835	5,994	344	2,982	895	5,950	258	1,705
대전	87	87	848	3,074	32,935	989	9,063	709	10,918	1,146	10,442	230	2,512
경기	481	481	4,665	14,788	89,628	3,992	23,815	2,503	22,151	6,629	34,142	1,664	9,520
강원	226	226	2,259	7,585	68,927	2,493	26,955	803	10,389	3,372	23,379	917	8,204
충북	164	168	1,610	3,823	36,620	1,059	9,074	588	7,359	1,455	12,670	721	7,517
충남	212	217	2,008	6,580	56,791	2,107	15,788	882	12,361	2,725	20,130	866	8,512
전북	272	272	2,702	6,736	93,801	2,110	24,338	1,452	25,084	2,416	24,433	758	19,946
전남	326	326	3,051	6,304	59,263	2,016	59,263	983	14,708	2,508	20,466	797	8,887
경북	374	374	3,541	8,001	71,307	2,671	71,307	1,242	19,474	2,981	22,270	1,107	8,327
경남	413	413	4,072	16,742	103,562	5,577	103,562	1,498	22,529	8,801	42,186	866	7,857
제주	43	43	418	1,762	11,939	318	11,939	173	2,961	1,041	5,741	230	1,534
계	3,774	3,778	36,915	109,046	868,896	33,135	868,896	17,162	207,292	46,546	302,277	12,203	111,976

한 결과는 설문조사가 지도위원 연수교육 중 실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참 여 율	빈 도	비 율
50% 이하	84	30.0
51 - 80%	62	22.1
81 - 100%	134	47.9
합 계	280	100.0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총 272부에 대해 각 변수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참여율을 분석하였다.

활동참여율은 학력, 직업별, 연령별로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참여율의 차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활동연수와 성별로 나타났다. 활동경력이 짧은 지도자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지도활동에 소극적이며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많고, 활동경력이 오래 된 사람이 참여율이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p=.00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경위에 따른 참여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된 경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p=.066$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10 참조)

< 표 10 > 청소년지도위원의 개인적 배경변수와 참여율

단위 : 명(%)

배경변수	변수값	참 여 율			합계
		낮음	중간	높음	
활동연수	1년이하	31(39.2)	6(9.8)	35(26.5)	72(26.5)
	2년차	30(38.0)	16(26.6)	20(15.2)	66(24.3)
	3년차	10(12.7)	12(19.7)	25(18.9)	47(17.3)
	4년이상	8(10.1)	27(44.3)	52(39.4)	87(32.0)
	소계	79	61	132	272(100.0%)
학력	중졸이하	10(12.2)	15(24.2)	29(22.8)	54(19.9)
	고졸	47(57.3)	26(41.9)	66(52.0)	139(51.3)
	대졸이상	25(30.5)	21(33.9)	32(25.2)	78(28.8)
	소계	82	62	127	271(100.0%)
성별	남자	63(76.8)	46(74.2)	93(72.7)	202(74.3)
	여자	19(23.2)	16(25.8)	35(27.3)	70(25.7)
	소계	82	62	128	272(100.0%)
연령	30대	16(19.3)	9(15.0)	18(14.1)	43(15.9)
	40대	39(47.0)	30(50.0)	54(42.2)	123(45.4)
	50대	21(25.3)	16(26.7)	42(32.8)	79(29.2)
	60대이상	7(8.4)	5(8.3)	14(10.9)	26(9.6)
	소계	83	60	128	271(100.0%)
직업	전문직			1(0.8)	1(0.4)
	관리직			1(0.8)	1(0.4)
	사무직	6(7.4)	2(3.4)	5(4.1)	13(5.0)
	판매/서비스	53(65.4)	38(64.4)	55(45.5)	146(55.9)
	생산직	5(6.2)	3(5.1)	21(17.4)	29(11.1)
	주부	15(18.5)	13(26.4)	32(26.4)	60(23.0)
	무직	2(2.5)	3(5.1)	6(5.0)	11(4.2)
	소계	81	59	121	26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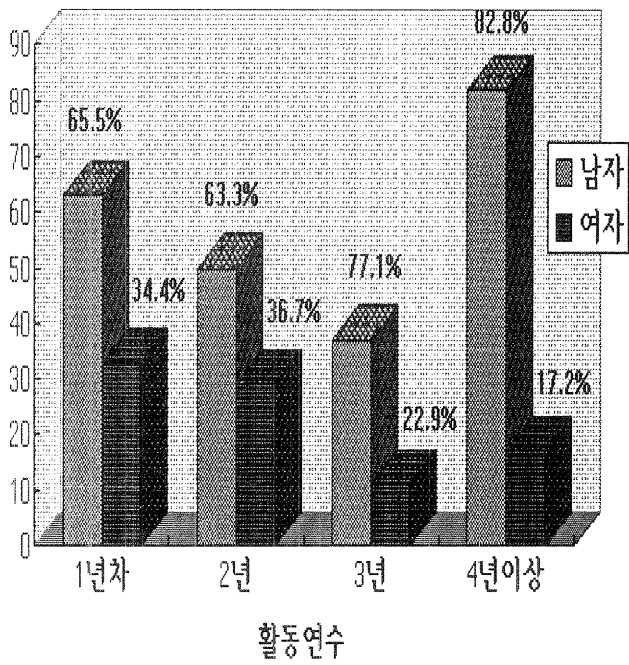
(3)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경력

활동연수별 청소년지도위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년 차가 29.2%, 2년 24.4%, 3년 14.6%이고 4년 이상인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활동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은 대부분 연임한 사람으로 청소년지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활 동 경 력	빈 도	비 율(%)
1년이하	98	29.2
2년	82	24.4
3년	49	14.6
4년이상	107	31.8
합 계	336	100.0

활동연한이 4년 이상인 자는 연한이 짧은 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많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활동연한과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활동연한이 긴 지도위원 중에는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연한이 긴 지도위원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p=.08$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활동연수에 따른 성별분포



<표11> 활동연수별 청소년지도위원의 특성

단위 : 명(%)

변수	변수값	활동연수				합계
		1년	2년	3년	4년이상	
성별	남자	63(65.5)	50(63.3)	37(77.1)	82(82.8)	232(72.0)
	여자	33(34.4)	29(36.7)	11(22.9)	17(17.2)	90(28.0)
	소계	96	79	48	99	322(100.0)
연령	30대	17(17.7)	12(15.4)	11(22.9)	9(8.9)	49(15.2)
	40대	51(53.1)	35(44.9)	14(29.2)	37(36.6)	137(42.4)
	50대	24(25.0)	22(28.2)	19(39.6)	35(34.7)	100(31.0)
	60대이상	4(4.2)	9(11.5)	4(8.3)	20(19.8)	37(11.5)
	소계	96	78	48	101	323(100.0)
학력	중졸이하	23(24.5)	14(17.5)	6(12.5)	27(27.3)	70(21.8)
	고졸	54(57.4)	43(53.8)	23(47.9)	47(47.5)	167(52.0)
	대졸이상	17(18.1)	23(28.8)	19(39.6)	25(25.3)	84(26.2)
	소계	94	80	48	99	321(100.0)
직업	전문직	1(1.1)	1(1.3)			2(0.6)
	관리직	-	1(1.3)			1(0.3)
	사무직	6(6.5)	3(3.9)	3(6.5)	4(4.2)	16(5.2)
	판매/서비스	40(43.5)	40(52.6)	28(60.9)	55(57.3)	163(52.6)
	생산직	18(19.6)	4(5.3)	6(13.0)	17(17.7)	45(14.5)
	주부	25(27.2)	25(32.9)	7(15.2)	14(14.6)	71(22.9)
	무직	2(2.2)	2(2.6)	2(4.3)	6(6.3)	12(3.9)
	소계	92	76	46	96	310(100.0)

(4) 지역사회에서 주된 활동 영역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가두 캠페인/홍보활동(59.6%)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은 17.2%이며, 불우청소년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14.8%이다.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전국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추세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지도위원의 활동이 전시적인 행사 위주의 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	도	비	율
가두캠페인/홍보	218		59.6	
불우청소년지원	54		14.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	63		17.2	
거의 활동 안함	23		6.3	
기	8		2.2	
합	366		100.0	

(5) 소속 지도협의회의 활동 정도

응답자가 소속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활발하다는 경우는 15.4%, 활발한 편이 29.2%로 응답자의 44.6%가 활발하다고 한 반면,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연수교육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응답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빈 도	비 율
매우 활발	57	15.4
활발한 편	108	29.2
보 통	156	42.2
그렇지 않음	39	10.5
전혀 그렇지 않음	10	2.7
합 계	370	100.0

4.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기술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활동 영역에 대해 지도위원들은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을 위한 유익환경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9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해환경 정화활동(87.7%)과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85.6%)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활동(81.4%)이나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지원활동(78.5%)은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도위원으로서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지각은 연령이나 성별,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항	매우 중요	대체로 중요	반 반	거의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합 계
1.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 익환경 조성	267 73.8%	67 18.5%	11 3.0%	9 2.5%	8 2.2%	362 100.0
2.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활동	228 63.9%	85 23.8%	26 7.3%	10 2.8%	8 2.2%	357 100.0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활동	184 52.2%	103 29.2%	41 10.9%	17 4.8%	8 2.3	353 100.0
4.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31 63.8%	79 21.8%	34 9.4%	3 0.8%	15 4.1%	362 100.0
5.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172 49.3%	102 29.2%	47 13.5%	14 4.0%	14 4.0%	349 100.0

5.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시 요구되는 지식 및 자질

(1)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시 필요한 지식(복수응답 3)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평소 지도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청소년의 심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27.8%),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21.6%), 대화방법 등 대인관계 기술(19.9%)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체 응답자 중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사람은 20.6%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선호하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청년 문화의 특성이 무엇

인지 알아야 그나마 세대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대인관계 기술등을 알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대상 청소년을 접할 때, 지도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행동 관련 치료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이며, 대상 청소년별로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의미있는 활동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법규 역시 적지 않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을 알고 이를 청소년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지도위원 연수등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

	전체응답빈도	전체응답비율	응답자비율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법규	77	17.0	20.6
문제행동 상담,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	98	21.6	26.3
청소년 심리, 문화등에 대한 이해	126	27.8	33.8
대화방법 등 대인관계 기술	90	19.9	24.1
문제청소년에 대한 현장 처리절차	56	12.4	15.0
기 타	6	1.3	1.6
합 계	453	100.0	

(2)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복수응답 3)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필히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애정(34.4%), 지도활동에 대한 사명감

(24.3%)과 도덕적 품성(2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도에 시행된 충청남도의 청소년지도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된다. 실질적인 댓가가 주어지지 않고 자발성이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전체응답 빈도	전체응답 비율	응답자 비율
청소년에 대한 애정	153	34.4	42.1
도덕적 품성	89	20.0	24.5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명감	108	24.3	29.8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	46	10.3	12.7
선도능력	46	10.3	12.7
기타	3	0.7	0.8
합계	445	100.0	

(3)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복수응답 2)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저조하고 특정 직업에 편중되며, 연령층이 높아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하는 자들이 많다. 자발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일부에 국한되어, 청소년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보다 생업에 지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자신의 생활시간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 종사자나 주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제한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한 바, 활동연한(33.6%)과 직업(25.7%), 연령(17.1)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가급적 청소년지도 경력이 많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노

년층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체응답빈도	전체응답비율	응답자비율
활동연한 제한	114	33.6	34.9
학력 제한	33	9.7	10.1
직업 선별	87	25.7	26.6
연령제한	58	17.1	17.7
성별 제한	17	5.0	5.2
기 타	30	8.8	9.2
합 계	339	100.0	

(4) 연수교육의 효과(복수응답 3)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0%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연수교육을 통해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39.1%로 가장 많고 청소년지도와 상담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경우는 34.0%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처방법(16.6%)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 생활에 대한 이해(16.3%)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연수교육의 효과	전체응답 빈도	전체응답 비율	응답자 비율
지도, 상담기술 향상	125	29.0	34.0
청소년비행에 능동적 대처	61	14.2	16.6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144	33.4	39.1
지도위원간 정보교환	30	7.0	8.2
청소년 생활에 대한 이해	60	13.9	16.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2.6	3.0
합 계	431	100.0	

이러한 결과는 1996년도 연수사업 평가와 거의 일치하는 바이다. '96년도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사회 일선에서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지도능력을 함양하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청소년 만들기과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을 홍보하며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질적인 지도·상담기법의 연수로 지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사례발표 등을 통한 지도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등으로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1996년 전국에서 실시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연수교육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반기(5건)보다 하반기(10건)에 집중되어 실시되었으며,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시행된 경우가 총 4건인데 반해 1일 연수에 그치는 경우는 11건이었다. 연수인원은 300명 이상인 경우가 8건으

로 대단위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규모의 연수교육은 대전시의 95명 단위로 실시된 교육이었다. '96년도 실시된 연수교육관련 예산을 15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15곳 중 6곳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더 많고, 8 곳은 지방비와 국고 보조의 비율이 각각 50%이며 단지 한 지역에서만 국고의 보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을 위한 예산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산에 비해 연수인원이 너무 많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1박 2일 이상의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선도체험과 현장 위주의 학습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소년개발원등 중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수정예화를 지향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수교육의 다양한 교과목 설정 및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선도 사례집의 정기적인 배포로 지도위원의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5) 연수교육시 필요한 내용(복수응답 3)

청소년지도위원의 청소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본 바 역시 앞서 지도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거의 일치된다. 청소년의 심리와 문화(26.5%), 상담 및 치료기관에 관한 정보(20.4%), 문제행동 처리절차 및 관련법규(19.1%), 대화방법 및 기술(19.1%), 문제행동의 원인 및 실태(15.0%)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 목	전체응 답빈도	전체응 답비율	응답자 비율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법규, 처리절차	85	19.1	23.2
상담 및 치료기관에 관한 정보	91	20.4	24.8
청소년 심리, 문화에 대한 이해	116	26.0	31.6
대화방법 등 대인기술	85	19.1	23.2
문제행동의 원인 및 실태	67	15.0	18.3
기 타	2	0.4	0.5
합 계	446	100.0	

6.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애로사항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상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매우 어렵다고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신분상의 문제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42.9%)이며, 활동비 부족(30.1%), 신분 불안(22.2%)과 신분, 역할상의 모호함(20.8%) 역시 많이 지적한 편이다. 밤 늦은 시간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거나 유해환경을 방문할 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행동을 제재하는데 신분상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도위원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하고,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일례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참여를 권할 때,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지역도 있다. 하물며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물론, 야간에 청소년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사명감만을 강조할 수 없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활동도 생업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치단체 내 청소년지도위원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확충되어 열악한 재정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활동하기 어려운 편인 경우까지 포함할 때, 앞서 언급한 바 외에 청소년지도 방법을 몰라 활동하기 어렵다는 경우가 69.5%, 청소년지도 활동에 대한 직장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경우 57.0%,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 51.3%, 학교나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한 사람은 49.9%에 이른다.

이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된다. 관계 기관의 협조 부족과 법규와 제도등이 지역활동에 미비하고 불량청소년 및 유해업소 단속 및 고발권 부여, 지도위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수당 지급등이 이루어져야 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항 목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반반	거의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합 계
활동비 부족	100 30.1%	128 38.6%	66 19.9%	35 10.5%	3 0.8%	332 100.0%
청소년지도방법에 대한 부족	53 15.7%	182 53.8%	78 23.1%	20 5.9%	5 1.5%	338 100.0%
법적 권한이 없음	138 42.9%	109 33.9%	49 15.2%	21 6.5%	5 1.6%	322 100.0%
신변불안	71 22.2%	98 30.6%	79 24.7%	57 17.8%	15 4.7%	320 100.0%
신분, 역할의 모호함	65 20.8%	112 35.8%	107 34.2%	22 7.0%	7 2.2%	313 100.0%
학교나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	49 15.4%	110 34.5%	104 32.6%	49 15.4%	7 2.2%	319 100.0%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직장 인식부족	53 17.3%	122 39.7%	86 28.0%	31 10.1%	15 4.9%	307 100.0%
시간부족	40 12.8%	120 38.5%	91 29.2%	49 15.7%	12 3.8%	312 100.0%
함께 할 만한 지도 위원이 없음	41 13.0%	107 33.9%	97 30.7%	49 15.5%	22 7.0%	316 100.0%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미진한 이유는 청소년지도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익히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지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역량 안에서 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선도 대상 청소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학교나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욱 청소년지도위원은 아무런 행동 제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대해 학교와 경찰, 상담기관등에 홍보하고 지역사회내 관계망을 형성하여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도움 요청에 대해 협조하고, 지역사회 순회활동시에 지역사회 기관의 관계자와 한 팀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상 경험하는 어려움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청소년 지도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나이가 젊은 30대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유형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도방법상의 어려움을 더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 값
청소년지도방법 무지	4.07	3.78	3.67	3.54	3.75 *

* $p < .05$

법적 권한이 없어 활동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연령층 역시 30대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의지가 실천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법적 권한 없음	4.22	3.83	3.84	3.72	3.22*

* $p < .05$

신변불안을 호소한 연령층은 30대와 60대로 나타났다. 특히 60대가 가장 불안해했다. 실제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하게 되는 시간과 공간은 범위가 일어나기 쉽다. 요즘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특징은 단독으로 행하지 않고 집단이 모여서 행동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어 이에 대한 무조건 충성을 다짐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다 잔인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움직임에 대해 신체적으로 열악한 60대가 가장 불안해했으며, 30대 역시 신변상의 안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는 대체로 30대가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처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활동상의 노련미 부족에서 오는 신변상의 불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신변 불안	3.76	3.35	3.33	4.04	4.44**

** $p < .01$

지도위원의 역할과 신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활동하기 어렵다는 연령층 역시 30대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이 문제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는데, 지도활동 경험이 많고, 오래 경험으로 지도위원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활동하기 수월한데 반해, 30대는 현재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지도위원 신분/ 역할모호	4.06	3.63	3.45	3.61	4.49 **

** $p < .01$

학교나 행정기관등의 협조 부족 때문에 활동하기 어렵다는 연령층 역시 30대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종사자와의 교류가 부족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학교나 행정기관의 협조부족	3.83	3.38	3.37	3.35	3.20*

* $p < .05$

직장에서의 인식부족 역시 30대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했고, 60대의 경우 어렵다고 지적인 사람이 적었는데, 이는 60대 중에는 은퇴

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청소년지도활동을 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 내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역할과 신분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생업을 병행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항 \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직장의 인식부족	3.78	3.56	3.59	3.00	3.45*

* $p < .05$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지도위원의 단속, 고발권 부여(63.1%),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55.3%), 최소한의 경비지원(43.4%)등으로 나타났다. 활동내용의 내실화(30.1%)와 지도위원교육 강화(24.3%)를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방법상의 개선(19.9%)과 직책이 중복되지 않는 위원을 선정(28.6%)해야 한다는 경우도 많이 지적되었다.

	전체응 답빈도	전체응 답비율	응답자 비율
직책이 중복되지 않는 지도위원 선정	106	10.3	28.6
최소 경비지원	161	15.7	43.4
활동이 생계에 도움되는 방안 마련	38	3.7	10.2
단속 및 고발권 부여	234	22.8	63.1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방법 변화	74	7.2	19.9
활동내용의 내실화	114	11.1	30.7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강화	90	8.8	24.3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205	20.0	55.3
기 타	3	0.3	0.8
합 계	1025	100.0	

이러한 지적은 충청남도 지역의 청소년 지도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되는 바이다. 현재 아무런 제재권한이 없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문제발생시 지역사회내 관계기관의 조속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해업소 업주들 역시 이들의 단속권이나 고발권 부재를 알고 별 반응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분상의 안전이 포함된다. 사명감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만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유해환경이 밀집된 지역을 순회하거나 청소년과 유해업소 업주들과의 대면이 있게 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상의 최소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의 문제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인식시키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5개 시도 주관으로 신규위촉자나 미이수자 중심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과제' 등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토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996년 전국에서 실시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연수교육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반기(5건)보다 하반기(10건)에 집중되어 실시되었으며,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시행된 경우가 총 4건인데 반해 1일 연수에 그치는 경우는 11건이었다. 연수인원은 300명 이상인 경우가 8건으로 대단위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규모의 연수교육은 대전시의 95명 단위로 실시된 교육이었다. '96년도 실시된 연수교육관련 예산을 15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15곳 중 6곳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더 많고, 8 곳은 지방비와 국고 보조의 비율이 각각 50%이며 단지 한 지역에서만 국고의 보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을 위한 예산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연수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지도능력을 함양하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청소년 만들기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을 홍보하며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질적인 지도·상담기법의 연수로 지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

가받고 있다. 특히 사례발표 등을 통한 지도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우수지도위원에 대한 표창으로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예산에 비해 연수인원이 너무 많아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1박 2일 이상의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선도체험과 현장 위주의 학습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소년개발원등 중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수정예화를 지향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수교육의 다양한 교과목 설정 및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선도 사례집의 정기적인 배포로 지도위원의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사기진작책 마련으로 자긍심이 고취되어야 하며, 자질 함양을 위해 장기연수와 신분 보장등 제도적 자치를 꾀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이 확충되어야 함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거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 218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행정기관, 학교 등 기관의 지원부족(39.0%)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지역 자체예산에 따라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외에는 다른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정상태는 열악한 편이다. 법규, 제도등이 지역활동에 미비하고 (34.4%), 활동은 하고 싶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21.6%)는 경우도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지도 권한, 자격 또는 모르는 것이 많아 확신성이 없다거나 중앙정부의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머문다는 경우도 지적되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 규정과 신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도위원의 신분보장은 전라남도 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996)에서도 나타난 바이다.

한편, 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불량청소년 및 유해업소 단속 및 고발권 부여(37.2%), 지도위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29.4%)와 정기적 교육(23.4%)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도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도덕적 품성, 청소년 지도에 대한 사명감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지도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도덕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도위원을 자원하기 보다는 동장의 부탁에 의해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직책(청소년선도위원, 폭력추방,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활동의 동기화가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지도위원 위촉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 활동 활성화 방안

본 절에서는 앞서의 조사결과와 관계 자료를 통해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활동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이나 신념, 지도활동에 대한 태도와 방향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활동여건의 개선, 법적 보완점, 관계부서간 공조체제 확립 등 환경적 요인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에서 본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신념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최선의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는 시각을 가지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환경만 제공된다면 이들 스스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입장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에 앞서 검토하고 이해해야 할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문제를 이들의 일탈행위, 과오, 병폐로 보아 죄악시하며 비관적이고 부정적 태도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문제를 성장 발달과정상의 문제로 보아 많은 적든 간에 그들이 필연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과제로,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훈육적, 억제적 방법으로 교육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는 기성세대의 태도 변화와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행동 예방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 지도에 있어 우선 대다수 청소년의 행동을 발달과업상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다소 과격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이들을 전부 문제청소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모두 선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최선의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는 시각을 가지며, 이들에게 올바른 환경만 제공된다면 이들은 스스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신념이 있을 때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다.

(2)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주요 자질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공동체 의식
- 청소년에 대한 애정, 도덕적 품성,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명감
- 스스로 생활에 모범적일 것
- 솔선수범적, 자발적 의지
- 이타적 태도

현대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됨에 따라 각 개인은 원자화되고 인간관계가 익명화되며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직적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부조리나 부패에 대해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보다 개인의 이익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요구되는 태도이

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당면 문제에 대해 응집된 시민의 힘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도덕적 품성, 청소년 지도에 대한 사명감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들보다 연령도 많고, 생활경험이 다양하여 인생의 선배라는 점에서 지도활동을 하기 용이한 점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충고만을 한다거나 청소년의 생활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세대차이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청소년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이러한 태도가 대상 청소년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위원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모범적이어야 한다. 성인들이 즐기고 청소년에게 금지했던, 그러나 오염될 수 밖에 없었던 퇴폐 매스컴, 출판물, 향락문화에 청소년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시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청소년지도위원에 위촉되어 3년 동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솔선수범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경위로 위촉이 되었건 간에 자발성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자질이다. 무엇보다도 활동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나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보다 동기화가 유발되고 활동상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상 요구되는 자질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므로, 이타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남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위원 활동을 통해 자기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회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의 일부를 서비스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며, 기술을 배움으로써 각 개인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준다는 점에 지도위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청소년지도 방향

청소년지도활동은 현실성이 있고, 일회성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즉 실행가능성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이해와 개인 차에 대해 인정하며, 가능한 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등 수용적 태도를 갖는다.

활동과정 중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색내지 않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조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 청소년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 파악하며, 사회적 상황에 비판적 안목을 갖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청소년지도활동을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몇몇 사항이 있다.

첫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역할에 맞추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즉, 현실에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의 가정적, 사회적 제약으로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경험을 제공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자아발달, 사회성 발달, 그리고

시민적 자질을 보완시키고자 노력한다.

세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각 개인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보다 지적으로, 기능적으로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회적 적응훈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네째, 청소년문제는 개인 자신의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며, 그런 해결방식까지도 청소년 지도에 포괄시킨다.

다섯째,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고 참여하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시킨다.

활동상 유의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인구 비례, 청소년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 청소년들과 직접 접할 때, 너무 빨리 다가가고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청소년이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행하도록 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청소년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자원, 즉 교육정도, 물리적, 경제적 자원 소유, 개인적 자질과 성격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활동과정에 절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활동도 청소년의 자존심을 자극해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인간에게는 개인 차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똑

같은 사람이란 없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개성과 능력이 있으므로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끈기와 인내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는 정중하면서도 친밀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있다. 만나게 되는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건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 청소년 중에는 특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기인된다고 이해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권과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한다.

2. 환경적 요인에서 본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지도위원의 사기진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참여율 증대와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요하다.

○ 비금전적 보상에에는 각종 행사에의 초대, 지도위원간의 친목회 주선, 기관 간행물 우송등이 포함되며, 지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신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 금전적 보상에에는 식비지급, 교통비 지급, 수당지급, 사고대비 경제적 지원과 활동복등 제공 등이 포함된다.

○ 이 외에도 위촉/관리담당 기관이나 정부에서는 경찰이나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를 주선하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소년지도위원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실제적인 권한도 없는 지도위원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긍심이 고취시키고, 참여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6년도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참여율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 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보상에는 비금전적 보상과 금전적 보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금전적 보상에는 각종 행사에의 초대, 지도위원간의 친목회 주선, 기관 간행물 우송, 취미, 교양강좌 개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금전적 보상에는 식비지급, 교통비 지급, 수당지급과 활동복등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이 이런 것을 기대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효율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밤 늦은 시간이나 유해환경 속에서 지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도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되다 보면, 지도위원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 사기가 저하된다. 이들의 위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부에서는 관계기관의 연계를 주선하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적 성격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지도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그때 그때의 경제적 보상보다는 지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신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기를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2) 사회적 활동여건의 개선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여건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위원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립/역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현실성 있는 역할기대
- 행정기관, 학교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 지원 보장
- 열악한 재정형편 개선으로 최소활동비 제공
- 유해환경 및 비행에 대한 단속 및 고발권 부여
- 신분보장을 통한 소속감 및 정체감 확보

청소년지도위원이 소신껏 활동하기 어려운 점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위촉되었다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역할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미약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미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기관장이나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의 부족으로 활동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 학교 등 관계기관의 지원 부족과 열악한 재정형편 역시 행동상의 장애를 가져오는 주 원인이 된다. 지역 자체예산에 따라 지도위원 지원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외에는 다른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로, 매우 열악한 편이다. 지도위원 활동비용 조차 본인 부

담으로 한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도위원에게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

청소년 관계 법규나 제도 등에 대한 무지, 지도할 권한, 자격 또는 모르는 것이 많아 확신성이 없다거나 중앙 정부의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 규정과 신분 안전이 보장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범 지역이나 유해업소 방문 지도시에 발견되는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활동의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불량청소년 및 유해업소 단속 및 고발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신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복장이나 신분증을 지급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한다.

(3)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위험 보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관련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품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사고보상보험에 가입시킨다.

청소년지도위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도위원의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지도활동 중 고의가 아닌 행위, 특히 타인의 물품을 훼손했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험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에 대비하는 감독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상황에 대비하는

지침, 운영규칙, 절차 등 목록을 작성하여 교육시키고 감독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관찰 지역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고보상 재원 대책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사고보상보험에 가입시킨다.

(4)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방법의 변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발적인 인물을 참여시킨다. 자발성 있는 인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위원 활동기간이나 활동경력을 사회경력으로 반영해주거나, 지도활동 참여시간을 업무시간으로 간주한다거나 활동참여에 대한 해당기관장이 발급하는 참가증을 배포하여 공인된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시키거나 활동시간 저축제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조치이다.

○ 연령, 성별과 직업을 안배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청소년관련 학과 학생의 현장 실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교사를 지도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생수의 적정화, 청소년지도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담당 수업시간의 감소, 지도수당 지급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력을 교사임용시 경력으로 인정해주거나 우선 임용대상으로 하는 방안 역시 모색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도위원 위촉방법을 바꾸도록 한다. 현재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기 보다는 동장의 부탁에 의해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직책(청소년선도위원, 폭력추방,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활동의 동기화가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위원 위촉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가급적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발적인 인물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직업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이들 변수가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정이 깊고 이타심이 강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별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 20, 30대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세대이지만,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의식구조를 지녀 오히려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40, 50대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원을 가진 세대로, 개인적인 능력보다 도덕적인 인간적인 자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므로 지도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차별화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도위원의 활동이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므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청소년학과나 청소년지도학과의 학생들의 현장 실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사들 중에는 청소년지도를 다른 곳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지도할 의욕이 있는 교사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나 이 경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체제로 지도에 필요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담당 학생수의 적정화, 청소년지도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담당 수업시간의 감소, 지도수당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때, 현실성 있

게 교사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할 때, 임용시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 직업에 종사하는 뜻있는 사람 역시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 활동기간이나 활동경력을 사회경력으로 반영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도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간주한다거나 활동참여에 대한 해당기관장이 발급하는 참가증을 배포하여 공인된 행위임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시키거나 활동시간 저축제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5) 구/군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 협의체 구성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위원협의체 구성은 기존의 방식대로 읍·면·동 단위에서 일차적으로 구성하되, 상위 조직으로 구/군 단위의 광의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 광의협의체 역할

- 지도위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 지도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활동 주도
- 지역사회내 다른 기관과의 공조체제 주선 및 연계

○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활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회나 구청내 최소 공간을 마련하여, 전화, 컴퓨터, 팩스, 책상, 의자 등 최소 장비를 제공해 준다.

청소년지도활동이 효율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체 구성은 읍·면·동 단위에서 일차적으로 조성되고 군이나 구 단위로 광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 협의체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을 제안해 볼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가 신속히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 사항,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 및 기간 등을 알려준다.

2)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앞서 보다 철저하게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담당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소속협회 다른 구성원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지역사회 모임, 대중연설과 매체 접촉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다. 청소년지도위원이 계속 의미있는 보람있는 활동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에 대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수용되며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신입 청소년지도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기존의 청소년지도위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거나 함께 야유회를 주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활동하는데 있어서 교통비나 식사제공에 대한 것이나 행사초대 등을 알려 줌으로써 이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

을 때, 이를 주선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5)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기본교육을 받았다 해도 활동의 지속성과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활동평가, 재교육,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선 예산, 전문인력, 공간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형편상 전적인 협조는 못받는다 해도, 청소년지도위원을 위한 어느 정도의 공간만 허용되면 활동자간의 조직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용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회나 구청 내 최소 공간을 마련하여, 이 곳에 전화나 컴퓨터, 팩스, 책상, 의자등 최소 장비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활동자간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위해 야유회, 체육회, 송년회 등을 하고 활동회보를 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의체의 관리자 역할은 연결이다. 친화력 깊은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하며, 사명감을 갖고 정기적인 홍보와 모임을 통해 기금 조성을 하거나 후원자에게 그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6) 연수교육의 내실화

기존의 연수교육이 형식주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단위의 연수교육과 일회성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수교육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주된 활동 영역을 정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장기 사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도 활동상 도움이 된다.

연수교육 역시 앞서 언급한 시·군·구별 광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수 단위로 참여의 폭을 넓혀 운영하여 내실화를 꾀하도록 한다.

처음 위촉된 지도위원의 경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교육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활동 영역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장기 사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도 활동상 도움이 된다.

기존의 연수교육이 나름대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15개 시도별로 대단위로 운영되고, 연수기회가 부족하며 연수기간도 짧고, 연수참여 유인체제의 미비 등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 함양 면에는 실패하고 있다. 연수교육은 지도위원간의 교류 기회도 되고, 정서적 지지의 장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단위로 경직되게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 연수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형식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무에 관련된 사항은 하급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수교육 역시 앞서 언급한 시·군·구별 광의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수 단위로 참여의 폭을 넓혀 운영하면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7) 청소년관련 부서 및 민간/관 주도기관간 협조 체제 확립

청소년복지/교육/선도에 관여하는 민간/관 주도 기관 각각의 역할 소재를 분명히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면, 이들이 연합해서 보호활동을 펼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정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관 주도 행정체제 내 청소년분야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행정체제로 상부의 정책과 지시, 명령은 많고, 하부구조의 인적 자원 부족으로 청소년관련 정책 및 활동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민간의 단체와 관련 행정부처의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보호활동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정책도 범국민적 운동의 차원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리잡기가 요원하다. 특히, 청소년 관련 사업은 비생산적인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제력 향상이라는 목표 만큼 매진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계획에도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재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연수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 적어도 참가자에게는 여비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재정 형편은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각 부처간의 중복 행정의 불합리성과 협조체제의 부재 등 청소년행정의 불합리성은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어떤 경우는 상호 경쟁적으로 실적올리기 위한 형식 위주의 행정을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책임전가나 회피의 무사안일주의의 행정 행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방에서는 청소년행정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인 업무처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행정이 미분화적으로 다른 행정 업무와 혼재되거나 부속되어 있어서는 책임행정의 구

현이 어렵다. 역피라미드 구조의 행정체제에서는 정책과 지시, 명령은 많되 하부구조의 역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며, 상부의 지시, 명령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상 연계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해야 한다. 어느 특정 부처가 앞에 나서서 문제를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소년과 관련있는 기관이 연합해서 보호활동을 펼치고, 공동대처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정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나 각 구청에서 활동하는 지킴이, 청소년지도위원과 경찰, 교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등이 한 팀을 이루어 교대로 활동을 펼친다면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정서적인 지지 하에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역할 소재를 분명히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1995). 사회사업실천론. 나남출판.
- 김한구외 7인(1997). 자원봉사론. 백산출판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조휘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복지연구회(1997).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론.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정보안내센터(1996).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자원봉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무자용 안내지침서-.
-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개발연구.

< 요약 >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각 문제간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다. 각 사회문제가 과급된 지역이나 대상이 증대됨에 따라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좋은 의도에 비해 힘이 못미치며, 국가의 조직적인 공권력은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편의성은 있으나, 거대한 조직은 매우 경직되어 탄력성 있게, 각 지역 사회의 특성에 걸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문제의 양태, 즉 조폭화되며 조직적인 청소년문제의 빈번한 발생은 청소년 또래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을 위협할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상태를 이미 예견한 많은 청소년관계자의 경고를 받아들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해 왔다. 청소년의 행동은 같은 세대인으로서의 공통적 특성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의 영향을 받아 차이를 보인다. 지역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사회에서의 청소년지도 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시·군·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폭넓게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 민간인의 응집된 힘과 실천을 기대했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주로 유해업소를 방문·지도하거나 가두 캠페인을 하는 것에 그쳐 현실적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극적인 위촉된 활동을 하게 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함부로 꾸짖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가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 뜻있는 일반인이 용기있게 행동할 수 없다. 또한 일반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자발적으로 그 직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권유나 지역사회 내 다른 직책을 갖고 있어서 당연직 처럼 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은 활동 결과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봉사활동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활동,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구태의연하게 지도위원을 선정한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도위원들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람이 가장 많고, 청소년지도와 상담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연수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나 문화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거의 1/3정도 되었다. 한편,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법규나 처리 절차, 대인관계 기술과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상이나 분위기에 대해 기성세대인 청소년지도위원의 의식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생활과 행

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조사한 바, 경쟁적인 입시제도와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어른들의 향락문화, 왜색문화, 과소비 풍조등도 문제라고 응답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오랜 시간을 통해 누적되어 온 학력 제일주의, 성적 지상주의이다.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야 되고, 결과만이 중시되는 업적 제일주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조장하고, 묵시적으로 이를 부추긴다. 이러한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성공의 대열에 끼지 못할 수 조차 없는 청소년층은 소외감과 좌절 속에 무력감을 보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가나 학교 근처든 간에 각종 유해환경은 무차별적으로 홍수처럼 범람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 학교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업부적응 집단은 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곳은 대부분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장소이다. 소득증대를 위해 윤리의식을 버린 채,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고용하는 업주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 곳으로 빠른 속도로 유입된다.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두 집단 간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또한 유명메이커 제품을 선호하는 과시성 소비 역시 경시할 수 없는 바이다. 자기과시의 수단으로 외국 제품을 선호하지만,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 규모가 커지고, 대부분 즉흥적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행동이 습관화된다. 이러한 충동성, 과시성 소비행동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여 자기조절 능력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인 것은 신분상의 불안정, 법적 권한 부재, 활동비 부족등 때문에 지도활동을 펴기 어렵다고 했으며, 청소년지도 방법에 대한 무지,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직장등 사회의 몰이해 역시 활동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하는 방안으로,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신념이 있고, 긍정적 사고를 지니며, 청소년지도활동 자체에 대한 철학과 활동상의 유의사항, 방향등에 대해 주관이 있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지닌 자로서, 수용적인 태도와 인내심이 요구된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관내 체육대회나 행사에 초대되거나 기관 간행물을 받아보는 등 비금전적 보상과 식사비나 교통비등 최소한의 활동경비, 사고대비 보험금 지급이나 활동복 지급등 금전적 보상도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다양한 층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도위원 활동 참여시간을 사회경력 또는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거나 활동시간 저축제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참여를 청소년관련 학과 학생이나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경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사 및 교사대기 발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업부담 경감이나

교사임용시 지도위원 활동경력자를 우대한다거나 인정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면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각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중앙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나 군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 협의체 구성 등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며, 지도위원이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모여 정보교류를 하고, 소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이들만의 최소한의 공간과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설비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나 경찰, 청소년관련 민간/관주도 기관의 협조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중앙이나 지방 모두 청소년분야의 인적 자원은 부족하고, 청소년 보호활동에 있어서 관과 민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각각의 역할분담은 분명히 하면서,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 횟수와 활동 범위를 늘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 부 록 :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3. 설문지

1.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 나.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과 물건을 말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를 제외한다), 잡지(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를 제외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이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등급구분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종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관련단체는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납본) ①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장)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 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구분·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계재·전시·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 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

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 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이미 고시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제24조 (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치료·재활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7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청소년문제에 관련된 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청소년관련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0조 (위원장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위원의 임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3조 (조직 및 운영)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③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 (보고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검사 및 조사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수거·파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시정명령)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3조 내지 제20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 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이유명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1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토 한다.

제4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 (증표교부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협회 등의 구체적인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 (권한의 위임등)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별 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자(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다)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경감)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령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범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과 물건"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선정성·포악성·잔인성을 유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기구·완구류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명백하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명백하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소
2.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

제4조 (매체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 · 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및 고시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급구분의 종류 · 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확인의 요청등을 할 수 있는 단체(이하 "자율

규제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거나 미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율규제단체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가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납본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하여야 할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납본서에 당해매체물 1부를 첨부하여 국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호로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국내유통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물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절차를 거친 간행물로 한다.

④ 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

의 수입추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납본보상)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당해 매체물의 수입원가로 한다.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알 수 없거나 당해 매체물의 특성 및 유통단계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된 자외의 당해 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행위와 관련된 자(이하 "유통행위자"라 한다)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유통행위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나 이에 위반시의 처벌내용등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 ·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복제·수입한 자로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장하여야 할 자를 알 수 없거나 당해 매체물의 특성 및 유통단계등을 고려하여 유통행위자가 포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유통행위자에게 포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지체없이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소년연령확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이하 "판매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구분·격리방법)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청소년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청소년연령확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립병원·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치료·재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조·제작·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해표시는 당해 약물등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해표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당연직 위원)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내무부·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공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4조 (회의의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

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부문별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위원회는 매체물위원회 · 약물위원회 · 업소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위원회는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부문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수당과 여비)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 (보고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위반 또는 준수사항 불이행의 내용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30조 (수거의무자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를 하여야 할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파기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시정명령의 종류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 (증표교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개인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신고방법)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은 구두신고한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심의대상도서의 범위)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자체수집한 도서
2. 자율규제단체로부터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도서
3.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뢰한 도서

제3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견제시등)

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발행 · 복제 · 수입한 자등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의견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추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
2.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 협회
3.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4.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 · 비평과 관련된 단체 · 협회
6. 도서류(만화를 제외한다)의 창작 · 제작 · 비평과 관련된 단체 · 협회
7. 만화의 창작 · 제작 · 비평과 관련된 단체 · 협회
8. 교원관련단체 · 협회
9. 청소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 여성 · 종교 · 소비자 관련단체 · 협회

10. 간행물심의와 관련된 학회 · 전문기관

제38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탁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한다.

제39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 (과징금의 납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별표 2]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제13조관련)

구 분	유해표시 의무자
1.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2. 전자유기기구기판	제작·수입·복제한 자
3.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공연장 경영자
4.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 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5. 방송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자
6. 간행물	제작·수입·발행한 자
7.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

[별표 3]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14조관련)

구 분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1. 음반 및 비디오물	18세미만 청취불가, 18세미만 시청불가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이상, 다른 한쪽이 15mm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한다. ○비디오물 및 전자유기기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2. 전자유기기기기관	18세미만 이용불가	
3.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18세미만 관람불가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이상, 다른 한쪽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4.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8세미만 이용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5. 방송프로그램	18세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름 20mm이상, 적색테두리 두께가 3mm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안에 "18"이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를 화면우측 상단에 한다.
6. 간행물	18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이상, 다른 한쪽이 15mm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우측상단에 한다.
7.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18세미만 구독불가	○간행물의 표지에 간행물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별표 5]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종류(제31조관련)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 의무	납본명령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 의무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 포장의 훼손금지의무	표시·포장의무 준수명령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 금지의 의무	판매금지명령, 대여금지명령, 배포금지명령, ·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명령, 전시· · 진열금지명령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 격리등의 의무	구분·격리명령, 전시·진열금지명령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 선전제한의무	설치·부착금지명령등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의무	고용금지명령, 출입제한표시명령, 연령확인 명령, 출입제한명령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약물등의 판매등금지의무	판매금지명령, 대여금지명령, 배포금지명령, · 표시명령, 포장명령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제40조관련)

위 반 행 위	과 징 금 액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를 위반한 때	700만원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의 포장의무를 위반한 때	500만원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700만원
4.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물, 포장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00만원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 구분·격리의무와 자동판매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00만원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 방송시간규정을 위반한 때	500만원
7.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광고물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00만원
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800만원
9.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 위반한 때	300만원
10.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600만원
1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술판매자 2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3. 설문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위원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위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한국청소년개발원

8.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된 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9. 선생님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 _____ ① 가두캠페인/ 홍보 _____ ② 불우청소년지원
 _____ ③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단속
 _____ ④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_____ ⑤ 기타 (_____)

10. 소속된 지역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활발한 편입니까?

- _____ ① 매우 활발하다. _____ ② 활발한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그렇지 않다.
 __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평소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법규
 _____ ② 청소년 문제행동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
 _____ ③ 청소년 심리, 문화등에 대한 이해
 _____ ④ 대화방법 등 대인관계 기술
 _____ ⑤ 문제행동 청소년에 관한 현장에서의 처리절차
 _____ ⑥ 기타 (_____)

12.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청소년에 대한 애정 _____ ② 도덕적 품성
 _____ ③ 청소년지도에 대한 사명감
 _____ ④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
 _____ ⑤ 선도능력 _____ ⑥ 기타 (_____)

13.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활동연한 제한 ☐ ② 학력 제한
☐ ③ 직업 선별 ☐ ④ 연령 제한
☐ ⑤ 성별 제한 ☐ ⑥ 기타 ()

14.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시오

- ☐ ① 폭력추방, 통장, 새마을지도자등 다른 직책과 중복되지 않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②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 수당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③ 활동에 참여할 때, 생업에 유리한 입지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불량청소년 및 유해업소 단속 및 고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⑤ 청소년지도위원 구성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 ⑥ 지도위원 활동내용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 ⑦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⑧ 청소년지도위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꾀해야 한다.
☐ ⑨ 기타()

◎ 선생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느끼는 정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반반	거의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15.	활동비 부족					
16.	청소년 지도방법에 대한 부족 (무지)					
17.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					
18.	신변 불안					
19.	신분/역할이 모호함					
20.	학교나 행정기관등의 협조부족					
21.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직장 의 인식부족					
22.	시간부족					
23.	함께 참여할 만한 지도위원이 거의 없음					
24.	기타					

25. 지도위원 연수교육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관련 법규 및 처리절차
 ___② 청소년 문제행동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
 ___③ 청소년 심리, 문화등에 대한 이해
 ___④ 대화방법등 대인관계 기술
 ___⑤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
 ___⑥ 기타 (_____)

26. 청소년지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연수교육은 어떤 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실질적인 지도·상담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
 ___② 청소년 비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___③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___④ 지도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___⑤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___⑥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음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세요)

27. 경로효친사상의 약화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28. 경쟁적 대학입시교육제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29. 열성적인 인기 연예인 지지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0. 유명메이커 제품만 선호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1. 자유로운 이성교제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2. 여성차별 감소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3. 성개방 풍조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4. 각종 유해환경 (만화, 비디오테이프, 컴퓨터통신, 유흥업소 등)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5. 어른들의 향락문화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않다	걱정스럽지 않다

36. 일본문화의 유입

①-----②-----③-----④-----⑤

매우 약간 반반이다 별로 전혀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지 걱정스럽지

않다 않다

37. 청소년보호법 시행

①-----②-----③-----④-----⑤

적극	찬성하는	반반이다	반대하는	적극
찬성한다	편이다		편이다	반대한다

38.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정부 및 시민단체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

①-----②-----③-----④-----⑤

매우 효과가 약간 효과가 반반이다 별로 효과가 전혀 효과가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 선생님과 관련된 몇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39. 선생님의 연령은 ? () 세

40. 선생님의 성별은 ? _____ ① 남 _____ ② 여

41. 선생님의 학력은 ?

___ ① 초등학교 ___ ② 중학교 ___ ③ 고등학교
___ ④ 대학교 ___ ⑤ 대학원 이상

42. 선생님의 직업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연구보고서 97-17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

인 쇄 1997년 12월 25일

발 행 1997년 12월 30일

발행인 김 사 홍

발행처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3☐7-☐☐☐5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 영 사

전화 739-217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578-7924(자료실)

ISBN 89-7816-169-3

